

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

Russia Non Tariff Barriers Issue

러시아, 식품 수출 시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 필수



제조일과 유통기한 필수 표기 필요, 수출 시 관련 기술 규정에 유의해야

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(Rosstandart)은 최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식품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의 표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확인함. 이는 제품 상자에 부착하는 라벨의 크기 변경을 위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과 관계 기관에서 유통기한 관련 정보의 표기 형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보로, **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(관세동맹) 기술 규정 《TR CU 022/2021》에 따라 식품 라벨 의무 표기 사항임을 강조함**

라벨 표기 정보를 줄이거나 표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동기가 필요하며, 이를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라벨의 크기 기준, 추가 정보의 QR 표기 방식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식품 라벨 규정인 《GOST R. 53598-2009 “식품, 라벨에 대한 권장사항”》을 2023년에 업데이트 할 계획임. **따라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《TR CU 022/2021》과 《GOST R. 53598-2009》을 준수하고, 《GOST R. 53598-2009》의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**

※ 《TR CU 022/2021》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

제4조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

(1) 식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

: 식품명, 식품의 구성, 식품의 양, **식품 제조일 및 유통기한**, 식품 보관 조건,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 및 소재지, 권장 사용법 및 사용 방법, 영양 정보, GMO 성분 포함 여부 및 관련 정보,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유통 표식

출처

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, ТР ТС 022/2011,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Росстандарт, ОБЯЗ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ЭТИКЕТКАХ ДОЛЖНА БЫТЬ ПОНЯТНА ДЛЯ ПОТРЕБИТЕЛЯ, 2022.09.14